

#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## 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서류제출 기한	2022년 8월 12일(금) ~ 8월 18일(목) 17시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)
제출방법	방문 예약 신청 후 견본주택 방문접수
견본주택 위치	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32번지 (대표번호 : ☎ 061-282-8004)
유의사항	-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※ 상기 제출증명서류는 최초 **입주자 모집공고일[2022.07.22(금)]**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
## 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기준	주요 확인 사항
	필수	해당			
공통	○		서약서	본인	- 견본주택 비치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본인	- 견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	본인	- 본인발급용에 한함, □ <b>본인서명사실확인서</b> 대체 가능 (용도: 주택공급신청용)
	○		인감도장	본인	- 인감증명서 상 도장 대조, <b>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</b>
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- 주민등록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, 운전면허증 등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-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-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- 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- 연속 90일 초과 / 연 183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- <b>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</b>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-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기타지역 청약 시 복무기간 확인
	○		국방부 추천명단	본인	-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해당지역 청약 시 추천명단 확인
	○	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본인	- 순위, 가입기간, 예치금 확인 / 인터넷 청약 시 생략
해외체류 단신부임	○		해외체류 관련 증명서류 (단신부임)	본인	- 국내기업 소속(건강보험, 재직증명서, 출장명령서)/해외기업 소속(현지 발급서류, 번역공증)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(단신부임)	세대원	- 등본상 세대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
	○		여권, 비자 발급내역 등	세대원	- 신청자의 해외체류기간 내 세대원 해외체류 시 동일 국가 체류여부 추가 확인
생애최초	○		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	본인	- 견본주택 비치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- 혼인여부 및 혼인신고일 확인(단독세대도 필수 제출)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전원	- 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	-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입증자료(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)
	○		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	본인	- 신청자의 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확인
	○		부동산 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- 자산 3.31억원 초과 여부 확인,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
	○		혼인관계증명서	자녀	- 만 18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 확인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피부양 직계존속)	피부양 직계존속	-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 부양 확인
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또는 해당자	- 견본주택 비치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	
대리인 추가서류	○		위임장	본인	- 견본주택 비치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)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- 본인발급용 확인(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) ※ <b>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</b>
	○	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- 대리인 본인 확인
	○		대리인 도장	대리인	- 서명가능
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	해당자		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	해당자		-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		해당자		- 소형·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, 등기사항전부증명서)
			해당자		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았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#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## 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(2022년 적용)

공급유형		구분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소득구분	우선공급 (50%)	130% 이하	~8,071,614원	~9,361,052원	~9,523,894원	~10,113,773원	~10,703,651원	~11,293,530원
	일반공급 (20%)	130% 초과~160% 이하	8,071,615원~9,934,294원	9,361,053원~11,521,294원	9,523,895원~11,721,715원	10,113,774원~12,447,720원	10,703,652원~13,173,725원	11,293,531원~13,899,730원
추첨제	소득 초과/자산충족	160%초과, 자산(3.31억)충족	9,934,295원~	11,521,295원~	11,721,716원~	12,447,721원~	13,173,726원~	13,899,731원~
		160%이하	~9,934,294원	~11,521,294원	~11,721,715원	~12,447,720원	~13,173,725원	~13,899,730원
	1인 가구	160%초과, 자산(3.31억)충족	9,934,295원~	11,521,295원~	11,721,716원~	12,447,721원~	13,173,726원~	13,899,731원~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453,753) \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  
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.(단, 세대원의 실종 ·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  
 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÷ 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 (단,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수를 포함)  
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.  
 ※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.

## ■ 자산보유기준(소득기준 초과자)

구분	자산보유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	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3억 3,100만원 이하	•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
	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
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		
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				
토지	•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- 「농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군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•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												

※ 상기 제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2.07.22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  
 ※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에는 『직인날인』이며 제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(단,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발급의 경우 제외)  
 ※ 상기 서류 및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#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## ■ 생애최초 소득입증 제출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(‘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’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- 해당직장 - 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-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-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	-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-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, 직인날인)	-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- 사업자등록증(사본) 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	-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-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	- 국민연금 관리공단 - 세무서
	신규사업자	- 사업자등록증(사본) -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- 국민연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	- 국민연금 관리공단 - 세무서
	법인사업자	- 법인등기부등본(사본) 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	- 세무서 - 등기소
	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	-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-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	- 세무서 -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-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-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-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: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	- 해당직장	
무직자	- 비사업자 확인각서(견본주택에 비치)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- 접수장소	